

■ 항공기등록규칙 [별표]

항공기 등록신청 등 수수료(제35조 관련)

구분	납부자	수수료
1.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	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 록을 신청하는 자 가. 법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 나.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 다. 법 제14조에 따른 이전등록 라. 법 제15조에 따른 말소등록	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
2.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	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 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 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	2백원
3.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수수료	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 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 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	1부당 9백원